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회 3분의 1 이상 요구로 증인 출석 요구〉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9호,
제2213750호 및 제2213752호)

2025. 11.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3.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나경원·곽규택·박준태·김종양·서천호·조배숙
인요한·추경호·고동진·신동욱·김성원·주진우
송석준·강명구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 의안번호 : 1375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현행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9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나경원 · 광규택 · 박준태 · 김종양 · 서천호 · 조배숙
인요한 · 추경호 · 고동진 · 신동욱 · 김성원 · 주진우
송석준 · 강명구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 의안번호 : 1374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나경원·곽규택·박준태·김종양·서천호·조배숙
인요한·추경호·고동진·신동욱·김성원·주진우
송석준·강명구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 의안번호 : 1375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는 그 의결뿐만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인등의 출석요구서를 위원장이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u>본회의나 위원회</u> 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u><신 설></u>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u>본회의</u> ----- ----- ----- ----- -----. ② <u>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현행	개정안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본다.

현행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짐.¹⁾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²⁾는 증인등의 출석요구서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위원회의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가 위원회의 의결 즉,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교섭단체 또는 정당의 의사를 중심으로 증인등의 채택 여부 및 대상

1)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이 결정되는 등 소수 교섭단체 또는 정당의 의사가 증인등의 채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위원회는 그 의결뿐만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이원화하는 한편,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에 있어 소수 교섭단체 또는 정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 의결로써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회관계법상 특정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이원화하여 규정하는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방식으로 위원회 의결을, 예외적인 방식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서도 소수의 의사가 존중·보호되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등의 출석요구가 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병렬

적·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사 결정의 원칙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관계법 체계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의결에 비하여 정족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되면 증인등 출석요구의 주된 방식으로 활용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 경우 위원회 의사결정의 일반적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형해화되거나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보임.

[표-2]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이원화 규정 현황

구 분	요 건
보고·서류등 제출 요구 (「국회법」 제129조)	(원칙)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 (예외)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은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보고·서류등 제출 요구 (국감국조법 제10조)	(원칙) 위원회 의결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 (예외)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고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원칙) 위원회는 의결로 고발 (예외)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
청문회 (「국회법」 제65조)	(원칙)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개최 (예외)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공청회 (「국회법」 제64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청회 개최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둘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본회의는 현행과 같이 의결로만 증인들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반면,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증인들의 출석요구가 가능하게 되는데, 증인들의 출석요구라는 동일한 성격의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 결정 요건을 달리 정하여야 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³⁾은 증인등 출석요구의 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출석요구할 증인을 위원이 위원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는 불필요해 보이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전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